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섬지역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9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점식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섬지역 기반시설 지원에 더하여 주민들의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섬지역을 대상으로 식수 확보와 물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비용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9. (생략) <u><신설></u>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섬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u> 6. ~ 9.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4(식수 확보 및 물관리)</u> <u>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지역 의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 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u>

현행	개정안
	<u>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의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한 해수담수화시설, 빗물이용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섬지역은 한정된 유역면적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심화, 지하수와 취수에 따른 해수 침투 가능성이 중첩되어 내륙과 대비되는 구조적 식수난을 겪고 있고, 섬 지역의 약 63%가 구조적 물 부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일부 소규모 비급수 도서의 경우 장기 가뭄 시 급수가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적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2025년 인천 옹진군·중구 9개 섬, 전남 진도군 15개 섬, 경남 통영시

1) 김중서, 「섬 지역 생활용수 공급체계 진단」, 한국섬진흥원 연구보고서(정책연구-2025-10), 2025.

1개 섬에서 자체 수원 고갈에 따른 비상급수 피해가 지속되어 주민 2,588명이 제한급수나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정주 여건 악화와 고질적인 물 부족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였고²⁾,

전남 완도군 넓도 등은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2017년 이후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빈도가 50%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타나 상습적인 물 부족에 노출되어 있어, 가뭄 발생 시 운반급수 등의 비상 대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³⁾에서 내륙에 비해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어려운 도서 지역에 대한 물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 바 있음.

이에, 지형적 한계와 취약한 기반시설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섬 지역의 만성적인 식수난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소외된 도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섬지역의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조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전국의 수자원 및 가뭄 현황을 조사하는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수자원 및 가뭄 관련 실태조사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 4. 23.), 「섬 비상급수 지역 가뭄대책 현장점검」.

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2025. 12. 22.), 「완도군 가뭄 “관심” 단계 발령」.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고, 해당 조사는 ‘가뭄 상황조사’를 통하여 매년 생활·공업용수 수원 및 급수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⁴⁾⁵⁾, 관련 실무 및 정보망 운영은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에 위탁되어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섬지역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식수 공급 및 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경우, 주무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군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존 조사 데이터와의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및 수자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명문화 및 섬지역의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법령상의 예산 지원 제도와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개발대상섬⁶⁾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개발대상섬 관할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소득 증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시설 정비와 섬개발 필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⁷⁾, 현행법상 사업계획의 범위에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및 수자원 관

6) 「섬 발전 촉진법」

제4조(개발대상섬의 지정)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대상섬(이하 “지정섬”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지정섬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섬발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7)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섬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섬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섬지역의 식수 확보와 물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대상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하고⁸⁾,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여⁹⁾ 식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역시 기존 법체계 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함.

이에 현행법상 시·도지사의 사업계획 수립 범위와 자금 보조·융자 규정 내에 섬지역의 용수 확보 및 식수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근거가 이미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섬지역의 물 부족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해당 내용의 명문화 여부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섬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의2. 섬지역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섬 발전 촉진법」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섬 발전 촉진법」

제11조(예산에의 계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 부족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바,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실태 조사 및 식수 관련 시설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